

강의평가 규정

□ 제정 : 2009. 03. 01

□ 개정 : 2016. 03. 01

□ 개정 : 2017. 03. 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1조와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조, 제6조에 근거하여 교원의 강의 평가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강의평가 설문양식) 강의평가 설문양식은 별도로 정한다.

제3조(평가항목) ① 강의평가서의 평가항목은 강의구성 및 진행, 학생과의 상호작용, 평가, 수업성과, 만족도, 수업(강의식, 외국어, 실험실습, 실기) 등으로 한다.

② 평가항목은 전체 15문항으로 하고, 각 문항은 5단계로 평가한다.

제4조(평가대상) 강의평가 대상은 해당학기에 개설된 전 교과목으로 하되, 팀티칭 강좌,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실습교과목 등 담당교원이 주된 역할을 하지 않는 강의는 강의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5조(평가지기) 평가지기는 매학기 종강 2주일 전부터 성적열람 및 정정기한내로 하되, 강의 평가 응답을 등을 감안하여 그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.

제6조(평가절차) 강의평가는 해당학기 수강학생이 본교의 학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(평가결과활용 및 관리) ① 교무입학처장은 강의평가를 총괄한다.

② 강의평가 결과는 강의개선에 적극 활용하고, 교수업적평가와 성과급지급 및 강사 등의 임용에 반영할 수 있으며,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③ 강의평가는 5점 만점으로 반영한다.

④ 강의평가 평과결과 하위 10%이하 전임교원

1. 교수법 컨설팅 의무화 및 해외여행 제한한다.

2. 동일과목 2회 연속인 경우

가. 제1호와 해당교과목 차기 1개 학기 강의를 제한한다.

나. 연구년을 제한한다.

제8조(강의평가결과의 조회 및 분석) ① 강의를 담당한 교원은 본인담당 교과목의 강의평가결과 및 순위를 본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.

② 학사관리부서는 강의평가의 결과를 분석하고 강의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③ 학사관리부서는 개별 교수자들이 자신의 강의평가 결과와 유형별 순위를 조회할 수 있도록

공지한다.

④ 강의평가의 결과는 학생에게 수강신청 시 강좌선택의 자료로 공개할 수 있다.

제9조(비밀유지) 강의평가 업무에 관여한 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0조(기타)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에 준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